

일 일 교 육 일 지		결재	담당부장	승무P/L	소장
교 육 인 원	일 시 교 관 장 소 교 육	월/일 1/1 1/2 1/3 1/4 1/5	9월 일	전 결	趙
			기지관제원	참 석	비 고
			10	10	A6 D5
			10	10	B4 A6
			10	10	C6 지 134 층 1
			10	10	D5 C5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가. 과태료 부과사례

- '18. 05. : ○호선, 특수차 운전직원 정지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18. 06. : ○호선, 출입문 미취급 운행(승객 미 승·하차)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 '18. 06. : ○호선, 무정차 통과 과태료 부과 심의 중

나.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전업무종사자(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6조의4)
 - 차량기지에서 출고 전 운전제어, 제동장치, 각종계기판 이상여부 미 확인
 - 정차역에서 승객의 승·하차 여부 미 확인
 -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되돌이 운전, 이상 시 관제 미보고 또는 관제 지시 불이행
 - 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단, 비상상황 또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제외)
 - 철도사고 발생 시 현장 이탈 또는 후속조치 미 이행
- 관제업무종사자(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6조의5)
 - 법령에서 정하는 열차운행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에 미 제공
 - 사고, 장애 발생 시 법령에서 정하는 조치 미 이행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등

【기지관제원(21명)】

성명	날인										
한인석	2018.01.01	구덕모	2018.01.01	양승용	2018.01.01	박재범	2018.01.01	장영권	2018.01.01	강석규	2018.01.01
조영대	2018.01.01	강신록	2018.01.01	김광희	2018.01.01	김경한	2018.01.01	김종열	2018.01.01	김주용	
최문규	2018.01.01	김정수	2018.01.01	이문주	2018.01.01	천용준	2018.01.01	이용승	2018.01.01	이용승	
박형준	2018.01.01	지영석	2018.01.01	유상열	2018.01.01	조영백	2018.01.01	김광정	2018.01.01	김광정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 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 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6조 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 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8. 제32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2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7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2. 제48조 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3. 제48조 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4.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6. 제7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6조 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4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제17호만 해당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 법 제8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1.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7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 법 제48조 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 나. 제동장치 기능
 -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125	250	500
나.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1조 제2항 제1호	62.5	125	250
다. 법 제8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125	250	500
라. 법 제20조제3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3호	2.5	5	10
마. 법 제26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125	250	500
바. 법 제26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2항 제2호	62.5	125	250
사. 법 제26조의5제2항(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5호	125	250	500
아. 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6호	125	250	500
자.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7호	75	150	300
차.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기피하는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7호	25	50	100
카.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8호	125	250	500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9호	125	250	500
파.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0호	125	250	500

철도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하.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1조 제3항	30	70	150
거.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1조 제3항	30	70	150
너.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1조 제3항	100	200	300
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1조 제3항	100	200	300
러. 법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4항	12.5	25	50
머. 법 제47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1호	12.5	25	50
버. 법 제47조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1호	5	5	5
서.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2호	25	50	100
어. 법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3호	50	100	200
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4호	25	50	100
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5호	125	250	500
커.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5호	25	50	100
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6호	125	250	500
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6호	25	50	100
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7호	125	250	500
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8호	125	25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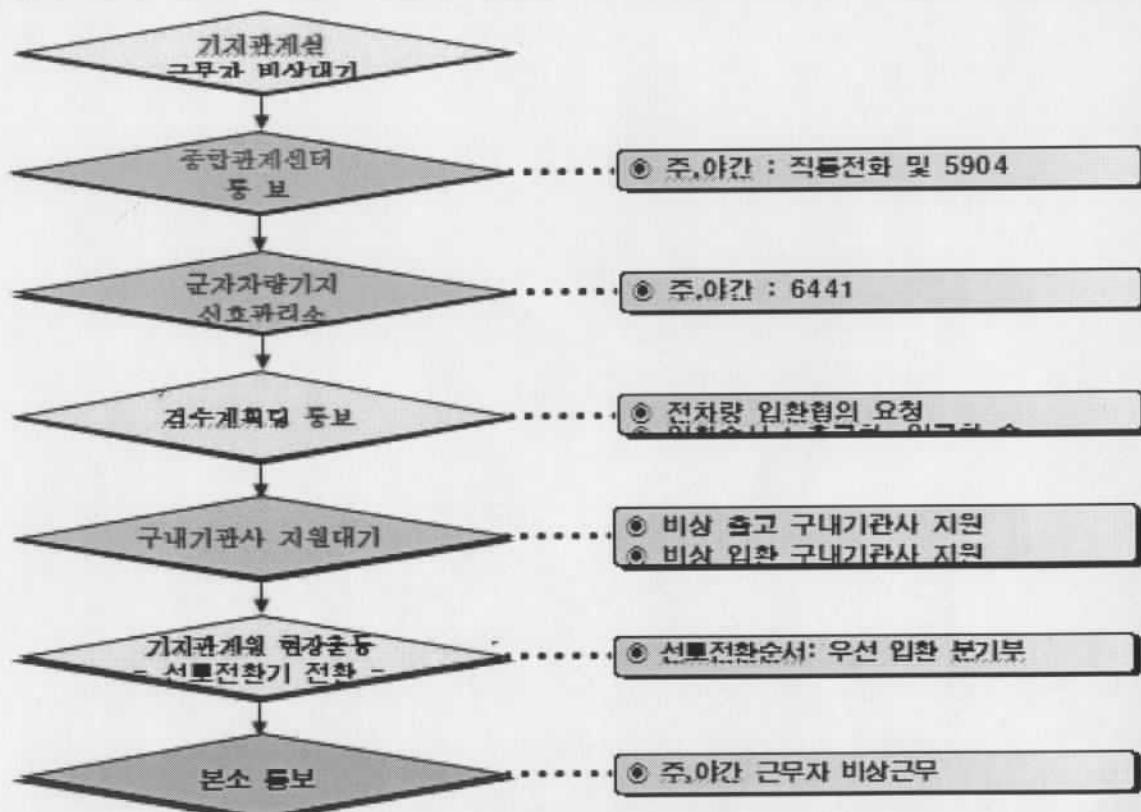
일 일 교 육 일 지

교 육 인 원	결 재	담당부장	승무P/L	소장
		유치원	전 결	정부
일 시	2019.1.6. ~ 1.10.	월/일	기지관제원	참 석
교 관	담당부장(수석기지관제원)	1/6	10	10
장 소	기지관제실	1/7	10	9
교 육	신호제어 불능시 수동진로 확보	1/8	10	9
		1/9	10	10
		1/10	10	11

신호설비 장애발생 시

○ 기지구내 신호설비 장애발생 시 조치

LCC 전면고장, DESIMO 불량, 기계실고장 등으로



【기지관제원(21명)】

성명	날인										
한인석	2018.12.26	구덕모	2018.12.26	양승용	2018.12.26	박재범	2018.12.26	장영권	2018.12.26	강석규	2018.12.26
조영대	2018.12.26	강신록	2018.12.26	김광희	2018.12.26	김경한	2018.12.26	김종열	2018.12.26	김숙윤	2018.12.26
최문규	2018.12.26	김정수	2018.12.26	이문주	2018.12.26	천용준	2018.12.26	이용승	2018.12.26	이용승	2018.12.26
박형준	2018.12.26	지영석	2018.12.26	유상열	2018.12.26	조영백	2018.12.26	김광정	2018.12.26	김광정	2018.12.26

선로전환기 수동취급시(DSS포함) 관계진로[군자기지 북부] 1

진로	경로
제2입고(LX)선→ 북부유치선 (A1~A7) 진로시	A1 216(R)→[213B(R)+214(R)+213A(R)]→211(N)→210(N) →[208A(N)+208B(N)]→A1번
	A2 216(R)→[213B(R)+214(R)+213A(R)]→211(N)→210(R) →A2번
	A3 216(R)→[213B(R)+214(R)+213A(R)]→211(R)→212(N) →A3번
	A4 216(R)→[213B(R)+214(R)+213A(R)]→211(R)→212(R) →A4번
	A5 216(R)→[213B(R)+214(N)+213A(R)]→215(N)→A5번
	A6 216(R)→[213B(R)+214(N)+213A(R)]→215(R)→A6번
	A7 216(R)→[213B(N)+213A(N)]→A7번
제2입고(LX)선→북부 출고선(10H=53L) 진로 시	216(R)→[213B(R)+214(R)+213A(R)]→211(N)→210(N) →[208B(R)+208A(R)+207B(R)+207A(R)]→10H(=53L) 북부출고선)
북부유치 1(A1)번 선→북부검수고 1,2,3(5),4(6) 번 진로시	R1 [208B(N)+208A(N)]→210(N)→211(N)→ [214(R)+213A(N)+213B(N)]→218(R)→266(N)→검수1 번
	R2 [208B(N)+208A(N)]→210(N)→211(N)→ [214(R)+213A(N)+213B(N)]→218(R)→266(R)→검수1 번
	R3 /5 [208B(N)+208A(N)]→210(N)→211(N)→ [214(R)+213A(N)+213B(N)]→218(N)→219(R)→ 221(N)→검수3번/....219(N)→220(N)→검수5번
	R4 /6 [208B(N)+208A(N)]→210(N)→211(N)→ [214(R)+213A(N)+213B(N)]→218(N)→219(R)→ 221(R)→검수4번/....219(N)→220(R)→검수6번
북부유치 1(A1)번 선→북부검수고 7,8번 진로시	R7 [208B(N)+208A(N)]→210(N)→211(N)→ [214(R)+213A(R)+213B(R)]→216(N)→217(N)→검수7 번
	R8 [208B(N)+208A(N)]→210(N)→211(N)→ [214(R)+213A(R)+213B(R)]→216(N)→217(R)→검수8 번

선로전환기 수동취급시(DSS포함) 관계진로[군자기지 북부] 2

진로		경로
북부유치5(A5) 번선→검수고 1,2,3(5),4(6)번 진로시	R1	215(N)→[213A(N)+213B(N)+214(N)]→218(R)→266(N) →검수1번
	R2	215(N)→[213A(N)+213B(N)+214(N)]→218(R)→266(R) →검수2번
	R3 /5	215(N)→[213A(N)+213B(N)+214(N)]→218(N)→219(R) →221(N)→검수3번/.....219(N)→220(N)→검수5번
	R4 /6	215(N)→[213A(N)+213B(N)+214(N)]→218(N)→219(R) →221(R)→검수4번/.....219(N)→220(R)→검수6번
북부유치5(A5) 번선→북부검 수고7,8번 진 로시	R7	215(N)→[213A(R)+213B(R)+214(N)]→216(N)→217(N) →검수7번
	R8	215(N)→[213A(R)+213B(R)+214(N)]→216(N)→217(R)→ 검수8번
북부유치7(A7) 번선→북부검 수고7,8번 진 로시	R7	[213B(N)+213A(N)]→216(N)→217(N)→검수7번
	R8	[213B(N)+213A(N)]→216(N)→217(R)→검수8번
북부출고선 (55R)→북부검 수 1,2,3(5),4(6)번 선 진로시	R1	[207A(R)+207B(R)+208A(R)+208B(R)]→210(N)→211(N) →[213A(N)+213B(N)+214(R)]→218(R)→266(N)→검수1 번
	R2	[207A(R)+207B(R)+208A(R)+208B(R)]→210(N)→211(N) →[213A(N)+213B(N)+214(R)]→218(R)→266(R)→검수1 번
	R3 /5	[207A(R)+207B(R)+208A(R)+208B(R)]→210(N)→211(N) →[213A(N)+213B(N)+214(R)]→218(N)→219(R)→ 221(N)→검수3번/.....219(N)→220(N)→검수5번
	R4 /6	[207A(R)+207B(R)+208A(R)+208B(R)]→210(N)→211(N) →[213A(N)+213B(N)+214(R)]→218(N)→219(R)→221(R) →검수3번/.....219(N)→220(R)→검수6번
북부출고선 (55R)→북부검 수고7,8번 선 진로시	R7	[207A(R)+207B(R)+208A(R)+208B(R)]→210(N)→211(N) →[213A(R)+214(R)+213B(R)]→216(N)→217(N)→검수7 번
	R8	[207A(R)+207B(R)+208A(R)+208B(R)]→210(N)→211(N) →[213A(R)+214(R)+213B(R)]→216(N)→217(R)→검수8 번

일 일 교 육 일 지

결 재	담당부장	승무P/L	소 장
	유치원	전 결	기지관제원
교 육 인 원	월/일	기지관제원	참 석
	1/11	10	10 C5/B4
	1/12	10	9 D4 C5
	1/13	10	9 A5 D4
	1/14	10	10 B4임/ A6
	1/15	10	C4임

선로전환기수동취급 절차

선로전환기수동전환 절차

현장 출동	- 선로전환기 위치 확인. - 비상용품 휴대 (수동핸들, 키클트, 열쇠 등)
현상태 확인	- 선로전환기 정·반위, 밀착, 쇄정 상태 확인
기지관제실 통보	- 기지관제실에 현상태 등보 기지관제실 지시에 따라 수동전환 실시
수동핸들 덮개 개방	- 선로전환기 외각 상단부 수동핸들 덮개 개방 수동개폐기 수동위치로 전환
수동핸들 삽입	- 삽입구에 수동핸들 삽입
전 환	- 수동핸들 회전시켜 전환 회전 끝까지 전환 (약 27회)
밀착, 쇄정 확인	- 철단부가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 쇄정창을 열어 쇄정 상태 확인
목 편 삽입	- 수동핸들은 제거하고 선로전환기에 매달려 있는 목편 삽입
기지관제실 통보	- 전환 상태 최종 확인하고 기지관제실 등보
정자 확인	- 취급실 정자를 전환하여 일자 정보 상태 확인
수동전환 종료	- 이상없음을 확인 후 취급실 지시에 따라 종료
원상 회복	- 상황 종료 후 원 위치로 복귀

【기지관제원(21명)】

성명	날인	성명	날인								
한인석	2019.1.11	구덕모	2019.1.11	양승용	2019.1.11	박재범	2019.1.11	장영권	2019.1.11	강석규	2019.1.11
조영대	2019.1.11	강신록	2019.1.11	김광희	2019.1.11	김경한	2019.1.11	김종열	2019.1.11	김종우	2019.1.11
최문규	2019.1.11	김정수	2019.1.11	이문주	2019.1.11	천용준	2019.1.11	이용승	2019.1.11	이용승	2019.1.11
박형준	2019.1.11	지영석	2019.1.11	유상열	2019.1.11	조영백	2019.1.11	김광정	2019.1.11	기. 광정	2019.1.11

일 일 교 육 일 지		결재	담당부장	승무P/L	소장
<u>유재현</u>			<u>유재현</u>	전 결	
일 시	2019.1.16 ~ 1.20.	교 육 인 원	월/일	기지관제원	참 석
교 관	담당부장(수석기지관제원)		1/16	10	9 D4재 C5
장 소	기지관제실		1/17	10	10 A6 D4
교 육	지적확인환호		1/18	10	10 B4b1 A6
			1/19	10	10 C5 B4
			1/20	10	8 D4 C4

운전규정(지적확인 환호)

제 29 조(적용대상)

- ① 운전관계직원은 직무수행 시 운전업무 취급부주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확인 환호를 하여야 한다.
1. 기관사 : 승무 중 신호, 전호, 운전관계표지, 기기취급 또는 차량점검 시 주요한 사항을 확인 및 기기를 수동취급 할 때
 2. 차 장 : 승무 중 출발신호기, 출발반응표지, 출입문취급, 기기취급 또는 차량점검의 주요한 사항을 확인할 때
 3. 역장, 소장 또는 신호직원, 기지관제원 : 열차감시, 신호취급, 선로전환기취급, 폐색취급 또는 열차운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확인할 때
 4. 운전관제 : 기기를 수동취급할 때 또는 열차운전 취급상 주요한 사항을 확인할 때
 5. 특수차운전원 : 운전 중 신호, 전호, 운전관계표지 또는 기기취급 시 주요한 사항을 확인할 때
-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직원과 동승한 수습승무원 또는 제3호 및 제4호의 직원 2인 이상이 동일업무 수행시의 지적확인 환호는 주업무 담당자가 먼저 시행하고 보조업무 담당자는 이를 확인 후 응답하여야 한다.

제 30 조(지적확인 환호요령)

지적확인 환호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먼저 취급 또는 확인할 대상물을 본다.
2. 인지로 대상물을 지적한다. 다만, 양손으로 기기를 취급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취급 또는 확인할 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4. 대상물의 명칭과 상태를 환호한다.

【기지관제원(21명)】

성명	날인										
한인석	2019.1.16	구덕모	2019.1.16	양승용	2019.1.16	박재범	2019.1.16	장영권	2019.1.16	장석규	2019.1.16
조영대	2019.1.16	강신록	2019.1.16	김광희	2019.1.16	김경한	2019.1.16	김종열	2019.1.16		
최문규	2019.1.16	김정수	2019.1.16	이문주	2019.1.16	천용준	2019.1.16	이용승	2019.1.16		
박형준	2019.1.16	지영석	2019.1.16	유상열	2019.1.16	조영백	2019.1.16	김광정	2019.1.16		

일 일 교 육 일 지

결 재	담당부장	승무P/L	소 장
	유철원	전 결	
일 시	2019.1.21 ~ 1.25		
교 관	담당부장(수석기지관제원)		
장 소	기지관제실		
교 육	기지관제 주, 야간업무		

월/일	기지관제원	참 석	비 고
1/21	10	10	A5 D5
1/22	10	10	B4 A6
1/23	10	9	B5 C4
1/24	10	8	D4 C4
1/25	10	11	A6 D5

기지관제 주간업무

주 간 업 무

업무 전 회의

- 기관사 근무표, 지시전달부 등 날인
- 지시전달사항 전달

업무 인수인계

- 기지구내 차량 유지 현황, 야간 업무 시 특이사항 등 업무 사항 인수인계

일일 업무 분장

- 일일 업무 분장

조작반 근무

- 출고 열차, 입고 열차, 일환열차 운전취급
(출고 시, 입고 시, 일환 시 취급절차 참조)

차량분리조성작업

- 관련 부서로부터 요청 사항 수보
(임환기 관계 처리 절차 참조)

연결기밀작시험

- 검수로부터 요청 사항 수보
(시운전 관계 처리 절차 참조)

ERP 선도작업관리

- 로그인 후 등지 검토

업무일지기록

- 주간 업무 사항 기록

업무 인수인계

- 주간 업무 시 특이사항, 전달사항, 차량 유지 현황 등 인수인계

【기지관제원(21명)】

성명	날인										
한인석		구덕모		양승용		박재범		정영권		장석규	
조영대		강신록		김광희		김경한		김종열			
최문규		김장수		이문주		천용준		이용승			
박형준		자영석		유상열		조영백		김광정			

기지관제 야간업무

야간업무

업무전회의

- 교육, 지시전달부 등 날인
- 지시전달사항 전달

업무인수인계

- 기지구내 차량 유치 현황, 주간 업무 시 특이 사항 등 업무 사항 인수인계

일일업무분장

- 일일 업무 분장

조작반근무

- 임고 열차, 입환열차 운전취급
[임고 시, 입환 시 취급절차 참조]

통지검토, 승인요청

- ERP에서 등지 검토 및 승인요청
[ERP 관계 처리 절차 참조]

선로작업승인부 수보

- ERP에서 선로작업승인부 수보

단전수보

- 관제로부터 단전 사항 수보

모터카관계처리

- 운전허가증 받부, 폐색취급, 모터카 운전취급
[모터카 취급절차 참조]

진도시험 및 보고

- 모터카 운행종료후 사전 진도시험 및 관제에 시스템 이상 유무 보고

급전수보

- 관제로부터 급전 사항 수보
- 임종고 열차 상황표 작성

출고열차운전취급

- 출고 열차 운전 취급
[출고 시 취급절차 참조]

ERP작업완료, 입력

- 야간 사항 ERP야간작업 확인 원료 입력
[ERP 관계 처리 절차 참조]

업무인수인계

- 야간 업무시 특이사항, 전달사항, 차량 유치 현황 등 인수인계

일 일 교 육 일 지		결 재	담당부장	승무P/L	소 장
일 시		2019.1.26~ 1.31.		이철민	전 결
교 관	담당부장(수석기지관제원)	교 육 인 원	월/일	기지관제원	비 고
장 소	기지관제실		1/26	10	10 B5 A5
교 육	청렴윤리교육		1/27	10	9 C4 B5
			1/28	10	8 D4 C4
			1/29	10	10 A5 D5
			1/30	10	10 B5 A5
			1/31	10	C4 B6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윤리 교육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주의사항

■ 공금횡령 유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함

- 장애인 지급 수당을 부풀려 신청하여 실제 수당과의 차액을 업무담당자등이 부당 수령하는 경우
- 특정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
-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이미 끝난 공사를 새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회계처리 등을 하는 경우
-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돌려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함

○○군 공무원 ○○○여 명이 사무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구입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부, 군 예산 수억 원을 유용하여 개인 유흥비 등 “예산 빼돌리기”를 한 혐의로 공무원 6명 구속, 불구속 기소되었고, 36명은 약식기소, 1명은 기소중지 등의 사례

■ 각종 수당을 부당지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직계존속 사망 등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
- 퇴학이나 휴학으로 자녀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 부부가 직원인 경우 두 사람이 수당을 부당하게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기지관제원(21명)】

성명	날인										
한인석	2018.12.26	구덕모	2018.12.26	양승용	2018.12.26	박재범	2018.12.26	장영권	2018.12.26	강석규	2018.12.26
조영대	2018.12.26	강신록	2018.12.26	김광희	2018.12.26	김경한	2018.12.26	김종열	2018.12.26		
최문규	2018.12.26	김정수	2018.12.26	이문주	2018.12.26	천용준	2018.12.26	이용승	2018.12.26		
박형준	2018.12.26	지영석	2018.12.26	유상열	2018.12.26	조영백	2018.12.26	김광정	2018.12.26		